#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의 안 번 호 | 253 |
|---|---|

2019년 3월 6일
교 육 위 원 회

##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년 10월 25일, 권수정 의원 외 16명**

**2. 회부일자 : 2018년 12월 31일**

**3. 상정일자**

○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6차 교육위원회

(2019년 3월 6일 상정ㆍ수정가결)

##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권수정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상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문 개정(안 제2조 외).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8년 10월 25일 권수정 의원 외 16명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53호로 발의되어 2018년 12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들에서 사용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개정취지에 대한 검토의견

○ 청와대는 지난 2018년 3월 20일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에서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32조와 제33조가 명시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꿈으로써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1)]

이날 브리핑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했다”고 개정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 이러한 취지에서 동 개정조례안도 헌법개정안과 동일하게 사용자 중심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꿈으로써 노동의 가치를 제고하고 노동자의 자주성이 존중받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입법적 조치로 사료됩니다.

---

1) 동 헌법개정안은 2018년 3월 26일 대통령에 의해 국회에 제안되고 5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의결되지는 못하였음.

[표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상의 용어비교]

| 근로 | 노동 |
|---|---|
| 부지런히 일함 |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

## 나. 용어변경에 대한 조문별 검토

○ 동 조례안의 용어정비와 관련해서 ‘근로’와 ‘노동’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활용을 달리하여 왔습니다.

[표2] [”근로”와 ”노동”의 시대별 활용]

| 시대 | 단어 사용 |
|---|---|
| 일제강점기 전(1895년) | 국민소학독본에서[2] ‘근로’와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함. |
| 일제강점기(1910~1945) | 근로정신대, 근로인민당, 노동절(1923~1963년) 등 사용함 |
| 1948년 | 대한민국헌법 제정<br>→제17조부터 제19조에 ‘근로’ 명시 ⇒ 현행까지 유지 |
| 1953년 | 근로기준법 제정 |
| 국가재건최고회의(1963년)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br>→당시 법안에는 공산진영에서 노동절을 정치적으로 역이용함에 따른 조치로 ‘노동→근로’로 변경하는 동 법률을 제안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음. |
| 1963년 ~ 현재 | ‘근로’와 ‘노동’을 병행하여 사용<br>→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

○ 다만 〔표2〕에서 알 수 있듯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상위법령에서는 ‘근로’와 ‘노동’을 병용하고 있으나 두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법률용어는 규범체계상의 통일성과 일관성 등을 바탕으로 명료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서

동 조례안이 수정하려는 개별 조례들의 법령체계와 사용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범자가 공감할 수 있는 법적 용어를 선택해야 하

2) 1895년(고종 32) 7월 학부(學部)에서 간행한 소학교용 교과서임.

는 것인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의견**

○ 동 조례안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도 동 개정조례안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과의(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경우에는 「법령입안·심사기준」에(법제처, 2017.12) 따라 '국민이 평소 자주 쓰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고 그 표현 또한 쉽고, 뚜렷하며, 어문 규범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기준에 비추어 "근로학생"을 모두 "일하는 학생"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834, 2019.1.23).

##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Ⅴ. 토론요지 : 생략.

## Ⅵ. 수정안의 요지 :

○ 교육적 측면에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함.

Ⅶ.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의안 번호 | 관련 253 |
|---|---|

제안연월일 : 2019년 3월 6일
제 안 자 : 교 육 위 원 장

## Ⅰ. 수정이유

○ 교육적 측면에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함.

## Ⅱ. 주요내용

○ “노동학생”을 “일하는 학생”으로 함(안 제3조)

## 3. 참고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근로학생”을 “일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근로”를 “일하는”으로 한다.

제29조제7항 중 “근로”를 “일하는”으로 한다.

# 수정안 대비표

| 원 안 | 수정안 |
| --- | --- |
| **제3조(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21조제2항 중 "근로학생"을 "**노동**학생"으로 한다.<br>제28조제1항 중 "근로"를 "**노동**"으로 한다.<br>제29조제7항 중 "근로"를 "**노동**"으로 한다. | **제3조(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21조제2항 중 "근로학생"을 "**일하는** 학생"으로 한다.<br>제28조제1항 중 "근로"를 "**일하는**"으로 한다.<br>제29조제7항 중 "근로"를 "**일하는**"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근로관계상”을 “노동관계상”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근로학생”을 “일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근로”를 “일하는”으로 한다.

제29조제7항 중 “근로”를 “일하는”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관계”를 “노동관계”로 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무기계약노동자””로, “근로계약

을 체결한 근로자”를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단시간노동자”란 1주 동안의 소정노동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노동자의 1주 동안의 소정노동시간에 비하여 짧은 노동자를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근로관계”를 “노동관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근로여건”을 “노동여건”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3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